

결혼비용, 의료비, 장례비용,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까지! '20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

(연리 1.5%, 1인당 최대 3,000만원 한도)

《 신청대상 》

근로형태별	용자 신청 대상
정규직	(신청일 현재)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, 전년도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근로자
비정규직	(신청일 현재)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/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* 비정규직 : 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
특수형태고용종사자	(신청일 현재)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산재보험 적용중인 자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* 특수형태근로종사자(13종) : 보험설계사, 건설기계종사자, 방문강사, 골프장캐디, 택배업무종사자, 퀵서비스업무종사자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모집인, 대리운전기사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판매원, 가전제품설치원, 화물차주

※ 신청제한: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(연체, 회생, 파산, 신용회복 등)·외국인·재외동포

《 용자종류 및 한도액 》

용자종류	신청요건	한도액
의료비	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(산후조리원, 요양시설 포함)	1,000만원 한도 (실제 발생비용 내)
부모 요양비	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(치매, 노인성 난청 등)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	1,000만원 한도 (대상인당 연 500만원)
장례비	근로자 본인, 배우자,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	1,000만원
혼례비	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 이내 결혼예정 또는 혼인신고한 경우	1,250만원
자녀 학자금	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	1,000만원 한도 (자녀당 연 500만원)
임금감소 생계비	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%이상 감소하였을 것	감소임금 내 2000만원 한도 (‘20.12.31.까지)
소액 생계비	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, 사업구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용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% 이상 감소한 경우	500만원 한도 (‘20.12.31.까지)
임금체불 생계비	신청일 현재 재직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연간소득액이 5,700만원(배우자합산)이하이고, 용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(휴업수당, 퇴직급여포함)이 체불된 경우	1,000만원 한도 (체불임금 내 또는 퇴직 전 초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)

※ 2종류 이상 용자신청 시 1인당 총 용자한도액은 3,000만원(‘20.12.31.까지)

《 용자조건 》

- ◇ 연리 1.5%
- ◇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선택
 -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(고정)
- ◇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(보증료 연 0.9~1% 별도 부담)

《 문의·상담 》

근로복지넷 www.workdream.net
☎ 1644-0083 복지사업 콜센터



복권위원회

이 사업은 저소득·임금체불 등 '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'를 실현하고자,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 지원됩니다.

근로복지공단

Korea Workers' Compensation & Welfare Service